

아동복지

○보육소(어린이집)

보호자가 일이나 병 등으로 주간에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생후 6개월에서 취학전 아동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보육료는 보호자의 시민세액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입소 신청은 보육입소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유아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12~4월 1일 입소 제외). 입소 희망일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육입소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12월~4월 1일 입소는 마감일이 빨라집니다(마감일은 시정 뉴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신제도인정과 0798-35-3160

신제도인정과에서 접수받는 인가 보육시설 외에 인가와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보육료와 입소 여부는 각 시설과 보호자간에 직접 결정합니다.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 등, 아동전반의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관련단체로부터의 통고, 송치에 의한 상담이나 보호자, 관계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상담, 전화에 의한 상담에 응합니다.

문의처

효고현 니시노미야아동가정센터 0798-71-4670

(니시노미야시 아오키초(青木町) 3-23)

○모자생활지원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은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모자세대로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 아이의 양육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 들여 아이의 복지를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아동·모자지원과 0798-35-3166

○조산시설

출산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조산시설이 있습니다. 단, 소득제한규정 등 이용에 있어서 조건이 따릅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아동·모자지원과 0798-35-3166

○아동수당

15살이 된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수당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89

○아동부양수당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신적 또는 신체에
다국어생활가이드 니시노미야판

중한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18 세가 된 후 첫번째 연 3 월 31 일까지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에 중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20 세 미만).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90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89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